

의안번호	2207003
의 퇴 인	임미애의원
회 답 일	2025.1.22.
추계번호	24D629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 ¹⁾ 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주민투표 실시(안 제5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은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려는 것으로, 시·도 통합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함에 따라 시·도 통합 등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1)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 있음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시·도 통합 등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주민투표 청구건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수, 투표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에 따른 추계가 곤란함

-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2005년 3번, 2012년 1번, 2013년 1번, 2020년 1번 등 총 6번 있었음
 - 이 중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요구에 따라 실시된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에 소요된 비용은 3억 8,500만원이었으며, 타사업 예산조정을 통해 비용이 마련됨²⁾
- 「주민투표법」 제27조제1항³⁾에 따라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함
 - 주민투표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용산출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후 각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함
 - 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투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현황은 5,500만원임⁴⁾

※ [참고자료] 주민투표 실시 현황

-
- 2)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민투표에 소요된 경비를 살펴보면, 2019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주민(청구권자 1,590명 중 19%)에 의해 청구되어 실시된 폐기물보상금 배분 주민투표의 소요경비는 5,500만원이었음
- 3) 「주민투표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 4) 동 예산은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추진, 법 제·개정 등에 따른 업무편람 제작 등의 업무지원 예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주민투표 실시 현황(2024.12.31. 기준)⁵⁾

□ 투표 실시(총 12건: 국가정책 6건, 지방자치단체 3건, 주민 3건)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지 역	청구권자	투표일	주민투표명 (추진사유)	투표율 (%)	투표결과(%) (진행상황)
2005. 06.21.	제주도	행정자치부 장관	2005.07.27.	행정구조 개편	36.7%	단일광역자치 (57.0%) 현행 유지 (43.0%)
2005. 08.12.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자치부 장관	2005.09.29.	청주-청원 통합	35.5%	찬성(91.3%) 반대(8.7%)
	충청북도 청원군				42.2%	찬성(46.5%) 반대(53.5%)
2005. 09.15.	전라북도 군산시	산업자원부 장관	2005.11.02.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70.2%	찬성(84.4%) 반대(15.6%)
	경상북도				47.7%	찬성(67.5%) 반대(32.5%)
	포항시				70.8%	찬성(89.5%) 반대(10.5%)
	경상북도 경주시				80.2%	찬성(79.3%) 반대(20.7%)
	경상북도 영덕군					
2011. 02.08.	서울특별시	류○○ 한○○	2011.08.24.	무상급식 지원범위	25.7%	미개표 종결
2011. 09.14.	경상북도 영주시	석○○	2011.12.07.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결정	39.2%	평은리(91.7%) 오운리(8.3%)
2012. 09.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수	2012.10.17.	남해에너지파크 유치동의서 제출	53.2%	찬성(48.9%) 반대(51.1%)
2012. 05.16.	충청북도 청원군	행정안전부 장관	2012.06.27.	청주-청원 통합	36.8%	찬성(79.0%) 반대(21.0%)
2013. 05.30.	전라북도 완주군	안전행정부 장관	2013.06.26.	전주-완주 통합	53.2%	찬성(44.7%) 반대(55.3%)
2017. 03.15.	강원도 평창군	김○○	2019.02.01.	미탄면 주민지원기금 관리방안 결정	61.7%	찬성(97.7%) 반대(2.3%)
2019. 09.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수	2019.10.16.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요구서 제출	52.81%	찬성(64.7%) 반대(35.2%)

5)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지 역	청구권자	투표일	주민투표명 (추진사유)	투표율 (%)		투표결과(%) (진행상황)
2019. 12.19.	대구 군위·의성 군	국방부 장관	2020.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군위 (우보)	80.6	찬성률50% +투표율50%(78.4%)
					군위 (소보)	%	찬성률50% +투표율50%(53.2%)
					의성 (비안)	88.6 %	찬성률50% +투표율50%(89.5%)
2020. 06.03.	충남 천안시	천안시장	2020.06.26.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10.3%		미개표 종결

주: 음영표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